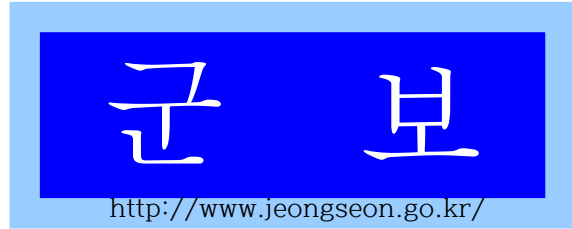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4호 2019. 6. 26. (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18호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6
- 정선군 조례 제2719호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720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 정선군 조례 제2721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2722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723호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32
- 정선군 조례 제272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36
- 정선군 조례 제2725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40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15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49
- 정선군 규칙 제1316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53
- 정선군 규칙 제1317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56
- 정선군 규칙 제1318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6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8호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선군 군민이 지속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함으로써, 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기 앱”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걷기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에 한정한다.

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
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남녀별 목표 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
2. 캠페인 등 관련행사에 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정선아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 앱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

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결함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같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활성화사업 추진업무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이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군민 걷기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4조)

- 걷기 앱에 가입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2. 마일리지 부여 등 지원방법 (안 제5조)

-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 달성 및 건강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
-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가입한 때 등

3. 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안 제6조)

-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정선아리랑·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 걷지 않고 목표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는 사용할 수 없음

4. 업무의 위탁 (안 제7조)

- 걷기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5. 표창 (안 제8조)

- 걷기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한 군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9호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재해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진폐(이 조례에서 “진폐”라 한다)를 앓고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진폐재해자의 지속적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사업
2. 재활치료 및 상담사업
3. 진폐사망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진폐단체, 군 소재 기관·법인 등(이하 “진폐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 등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진폐사업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진폐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진폐사업을 완료한 진폐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사용내역서
2. 해당 사업의 성과
3. 개선 및 발전방안
4. 필요할 경우 현장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진폐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진폐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3. 민원이 발생된 때
4. 해당 지원 진폐단체 등이 그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폐재해자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의 정의 (안 제2조)
2.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 하도록 함 (안 제3조)
3.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 지원 (안 제4조)
 - 건강관리 교육사업
 - 재활치료 및 상담사업
 - 진폐사망자 추모사업
4.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안 제5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의 지도·감독 및 환수 (안 제8조)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0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하며, 제7호의 경우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요율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를 “(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으로, “직계비속 자녀 중”을 “가장어린 자녀가”로, “미성년자 3명 이상”을 “미성년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m ³ 이상인 경우는 10m ³ 을 경감하고, 10m ³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에 한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 한하며, 제7호의 경우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 요금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8. -----(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가장어린 자녀가 ----- 미성년자--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시설 확대 및 감면 요율 조정 (제40조)

- 노인 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업종별 누진요율표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 적용
(사용량 누진요율표와 관계없이 톤당 500원 적용)
- 현행 세 자녀 모두가 미성년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감면 범위 확대
(10톤 초과시 부터 요율표 적용)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1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 “을 ” 제1항 및 제2항” 으로 “자동차세” 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로 하고 “법 시행령” 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 영 “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취득세” 를 “자동차세”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

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

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

< 삭 제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 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 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삭 제>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시행)으로 “장애등급” 용어 폐지하고 “장애정도” 에 따른 구분기준 변경으로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장애등급제(시각장애등급 4급) 개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2.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규정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2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장애급수가 높은 자”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1~3급”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도”를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

로, “장애 인”을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전단 중 “장애인으로서”를 “등록장애인으로”로, “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1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생략) ②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중 1급 내지 3급장애인 ③ (생략)	제5조(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현행과 같음)
2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 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생략)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생략) 2. 장애급수가 높은 자 3. (생략)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현행과 같음)
3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3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3. 「장애인복지법」 제32 조에 따라 1급에서 3급 까지 등록된 장애인 4. ~ 10. (생략) ② (생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 한 장애인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4	정 선 군 군립공원 관리 조 례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 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감면한다.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 의 감면)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 애 정도가 심한 -----.
5	정 선 군 지정관광 지 관람 료 및 시 설사용료 징수 조 례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제4 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 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 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 우 돌보는 사람 1명 11. · 12. (생략)	제7조(관람료 면제)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등록장애인 으로 시장·군수 또---- ----- 장애인 --- -----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 12. (현행과 같음)

조번	자치법규명	현행	개정안
6	정 선 군 공립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 9. (생략) ③ (생략)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등록장애인으로</u> ---- ----- ----- <u>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 <후단 삭제> 5.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7	정 선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도시가스 공급요청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 1. ~ 4. (생략)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6.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지원대상) 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7.1.자로 시행(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개정
2. 개정내용

연번	현 행	개정(안)	비고
1	장애등급	장애정도	
2	장애 ‘1 ~ 3급’	‘심한장애’	
3	장애 ‘4 ~ 6급’	‘심하지 않은 장애’	
4	장애 ‘1 ~ 6급’	‘등록장애인’	

3. 개정대상 조례

-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중 1급내지 3급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장애급수가 높은 자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중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12조의3제3항중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10호중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5호 1~3급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3호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를 말한다.

2.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LPG 미공급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이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LPG 소형저장탱크 : LPG를 저장 할 수 있는 200킬로그램에서 2,900킬로그램까지 용량의 탱크

나. 공급배관 :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

3.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미공급지역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지역 또는 해당 읍·면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보급률 미만의 지역

나. 경제성미달지역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4. “재정지원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또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급사업을 말한다.

5. “위탁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LPG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개인 중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위탁운영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급사업의 LPG를 사용하고, 해당 사용요금을 해당 사업자 등에게 납부하는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이 조례에서 “공급사업”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정선군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규모 및 방식
3.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 주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탁수행기관의 재정지원사업
2.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지원

④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LPG공급시설의 조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공급사업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 방식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1. 사업의 실현가능성
2. 사업비의 조달가능성
3. 주민들의 수용성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지원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지원 및 공급배관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급사업의 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자에게 재계약 하거나 신규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사업자의 공급사업 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군수는 협약기간 중 해당 사업자 등에게 협약취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합산한 위탁사업비를 산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1. 직접사업비
2. 간접사업비
3. 위탁수수료

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사용하고,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 된 후 그 위탁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정산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위탁사업비의 지급·사용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협약사항에 따른다.

제11조(준수사항) ① 사업자 등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공급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해당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부실시공 방지
 2. 해당 사업수행상의 위험요소 및 민원 해결
 3. 연료단가 적정성 및 지속적 공급 유지
 4.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5. 사업수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
 6. 공급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와의 사전 협의
- ② 사용자는 LPG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되, 그 밖에 공급사업의 성실한 참여·협력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시설의 설치 협력
 2. 자신의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3.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 참여

제12조(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 ① 사업자 등은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스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적립자금의 조성·관리) ① 사업자는 사용자와 군 소재 다른 지역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급단가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LPG 공급단가 적정화 적립자금(이하 “적립자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자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LPG 공급단가가 LNG 공급단가보다 낮아지면 그 단가와 적정 공급단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조성한다.

③ 사업자는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편입하여 그 연도의 적립자금과 구분·계리해야 한다.

제14조(점검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공급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고, 그 협약취소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 2. 협약사항,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LPG 공급시설을 시공한 때
 - 4. 공급사업의 수행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공급사업 참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1. 과도한 투자비에 비해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경제성이 우수한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정선군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제정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복지 증진 도모

☐ 주요내용

1.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총칙을 규정 함【안 제1조 부터 제5조까지】
2. 사업추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 부터 제15조까지】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4호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7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호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6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3호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6호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제9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제8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6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을 “수련시설” 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제4호부터 제7호를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4 제9호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을 “수련시설” 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6 제사호 중 “100미터” 를 “직선거리가 100미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제안이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함.
2.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보완한 상위법령을 반영함.
3.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여 그 설치절차를 간소화하고,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집수구역을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함.

□ 주요내용

1. 개별법령상 불일치한 기준정비(안 별표 5, 6, 7)
 - 주거지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 일치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완화(안 별표 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지역 완화
3. 시설용도에 대한 명확화(안 별표 5, 6, 7, 14, 20, 22, 24)
 - 각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명시
4. 거리기준 명확화(안 별표 26)
 -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기준에서 하천과의 이격 거리에 대하여 직선거리로 명확화

제254회 정선군의회(2019. 06.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25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을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흡연실의 설치 등)”을 “(흡연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u>	<u><삭 제></u>
<u>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u>	
6. <u>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	<u><삭 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u>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u> 하여야 한다.	③ ----- ----- ----- -- <u>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② (생략)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u>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u> 등 필요한 사	③ ----- - <u>표시방법, 표지판 내용</u> ----- -----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실의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안이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방법 변경 및 규칙으로 정하는 금연구역 안내판의 필요 사항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 및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제1항제5호~제6호)

-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 삭제 (규제심사 의견 반영함.)

2. 금연구역 표시(안 제6조제3항)

-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흡연실의 설치(안 제7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삭제

규 칙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5호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직무관련자가 되기 전 발생한 금전거래가 직무관련자가 된 후 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 되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속 기관의”를 “군의”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중 “알선·청탁”을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통지”를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이 규칙의”를 “행동강령”으로 한다.

별지제11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 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 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 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직무관련자가 되기 전 발생한 금전 거래가 직무관련자가 된 후 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군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 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② ~ ⑦ (생 략)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
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
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
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4. (생 략)

<신 설>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
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
되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군의 -----

----- 행동강령책임
관에게 미리 -----
----- .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
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
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
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통지, 갑
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행동강령 ---

 -----.

☐ 제안이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공공분야 갑질행위 근절과 해외출장 등 부당지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1. 사적이해 관계 신고대상 반영(안 제5조제1항제7호)
2. 퇴직자와 사적 접촉 사후 신고 기한 신설(안 제10조)
 - 사후 신고 기한: 5일 이내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갑질 관련 기준 신설(안 제20조의 2)
 - 민원업무 담당자, 조직내 상급자 등 포괄적·예비적 갑질행위 유형 구체적 제시 금지
4.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1조의 2)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6호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제1항 중 “출석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심사) ①·② (생략)	제6조(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16조(구성) ①심의회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16조(구성) ①----- ----- ----- - <u>다만,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신설>	② <u>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u>

② · ③ (생 략) 제17조(회의운영 등)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u>출석위원</u>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7조(회의운영 등) ①----- ----- - <u>재적위원</u> ----- -----. ② (현행과 같음)
--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 구성내용 신설

☐ 주요내용

1. 법제심사 의뢰 기한 신설(안 제6조 제3항)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20일전
2.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심의시 위원 구성 조항 신설(안 제16조 제1항)
 -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 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 5명 이상 포함
3.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정(안 제17조 제1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7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1. 표시방법

- 가. 표지판의 모양과 규격 및 재질, 설치 및 표시방법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나.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구 분	세 부 사 항
설치방법	지주식 또는 현수식, 스티커 부착, 노면표시 등
내 용	1. 도시공원 :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금연구역’ 2.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경계선 안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표시사항	-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 정선군 CI 표시

3. 설치 및 관리

- 가.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 라.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 마.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금연구역별 경계지정(안 제2조)
 - 도시공원 : 공원의 경계선 안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2.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안 제3조)
 -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 설치 및 관리
 -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표지판 즉시 변경 및 철거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8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그 밖의 무연고 사망자 확인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자 (유 족)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 의 관계			연 락 처		
	주 소					
사 망 자 현 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사유	병사□, 사고사□, 그 밖에 사유□		
	장 소					
사용신청 사 항	빈 소	호실	빈소추가	호실	안치실	호
	빈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발인일자	년 월 일	장지	
감면신청 사 항	감면근거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그 밖에 무연고 사망자 확인서류□				
변경사항 (변경사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그 밖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승인내용	안 치 실	호실	년 월 일 ~ 년 월 일	
	빈 소	호실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항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제안이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의 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 감면신청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1.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